제117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2. 7. 22.(금)]

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7. 22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: 2022. 7. 12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2. 7. 13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 제117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개회 중
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2.7.22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도시국장 최재안)

가. 제안이유

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내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의 연임 제한은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기준 중 ‘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’을 삭제함.(안 제65조 제6항)

- 두 번까지 연임(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) → 두차례만 연임

❍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(안 제65조)

다. 참고사항

❍ 관계 법령: 의안번호 9, P6
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제112조

❍ 예산 조치: 해당사항 없음

❍ 합　　의: 행당사항 없음

❍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2. 6. 17. ~ 6. 28.) 결과: 제출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현행 조례: 의안번호 9, P7 ~ P38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박선희)

□ 개정 배경(필요성)

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에 나타난 어려움을 개선·보완하고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.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안 제65조(구성)은

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인 제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촉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비하는 내용과

❍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해석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, 알기 쉽고 친숙한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임.

□ 종합의견

○ 금회 일부 조례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,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**적절**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